

## 공탁법 주요 개정사항 등 총정리

근래 공탁과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규칙, 예규, 선례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교재에 반영하여 노력하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자주 일부씩 반복되다보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공탁 주요개정 사항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일부 내용은 저의 교재나 수업시 반영이 누락된 상태였기에 이것도 포함하였습니다.

### ( 다 음 )

\*\*\*\*\* 재외국민등의 공탁에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4. 29 제정 2025. 6. 1시행)  
(이하 내용은 **이번에 처음 새로 제정된 것으로서, 종전내용을 교통정리한 것으로서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 제1장총 칙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 과 공탁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

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출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규칙 제65조제1호나목 의 외국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위임장의 제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예: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 등)
2.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3.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단,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는 날인 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4. 공탁물 지급청구 시 법원의 명칭 및 공탁번호

## 제2장 공탁신청

### 제5조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주소소명서면)

- ① 재외국민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표등·초본
  3. 체류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② 외국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사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4.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5.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신분증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

### 제7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37조 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 ①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른 인증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체류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0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 ① 외국인이 규칙 제37조 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 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 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

지급청구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동일인의 소명)

공탁관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이 내용은 이미 2024.04.16. 개정된 상태인데, 저의 교재에 반영을 누락하였음을 발견하였기에 먼저 추가합니다).

#### 제9조 (적용범위)

제4조(공탁관의 확인철저), 제5조(인가전 결재), 제6조(인가후 결재), 제7조(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 관리철저), 제8조(감독사무의 철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즉, 종전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불확지공탁한 경우에서....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도 ...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4. 4. 16 개정된 상태이나, 교재 반영이 누락된 상태이기에 알려드립니다(저의 교재 요약집 57면, 저의 기본 기본서 94면)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개정 2025.06.25 [행정예규 제1435호, 시행 2025.06.25.]

### 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화를 한 때에는 통화의 상대방 이름, 피공탁자와의 관계, 통화일·시·분을,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전화한 일·시·분과 "통화불능"사실을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 3.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 가. 피공탁자 본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증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공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 나.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한 경우

1) 대리인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신분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대리인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받고 공탁통지서를 교부한다.

3) 이 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라. "가항 2)" 및 "나항 3)"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에 관한 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 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1제2조제4호 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

1)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등: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https://ive.mobileid.go.kr>)

### \*\*\*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5. 6. 26 개정, 2025. 8. 18. 시행)

#### 1. 개정이유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 \*\*\*\* 형사변제공탁 회수 관련개정내용(공무원교육권 교재)

형사변제공탁 회수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 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i)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통고한 경우, ii) 공탁의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이때 공탁물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의2)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1. 공탁서 정정이란 공탁서에 공탁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가 있음을 공탁수리 후에 발견한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것을 말하는데, 공탁서 정정에 관한 공탁규칙 제30조에는 정정신청의 종기에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토지수용절차에서는 공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위해서 공탁서의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실익이 있으므로, 공탁자는 공탁금이 지급된 후에도 공탁서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공탁서의 정정은 이미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에 따른 공탁의 법적안정성과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탁서및 첨부서면 전체취지로 보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을 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공탁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탁기록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정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공탁원장 등을 참작하여 정정신청의 수리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02303-1).

**\*\*\*\* 변제공탁의 출급 관련 선례**

사용자인 법인이 민소 579조 4호(민집 246조 1항 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89).

**\*\*\*\*\*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 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법령을 민 법 제487조로 하고, 피공탁자는 '양수인(가처분채무자)'으로 하되, 위 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 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한편 위 1.과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 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제3채무자는 위 1. 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 제487조의 변 제공탁을 할 수 있다.(2024. 6. 10. 사법등기심의관 - 3002 질의회답)

**\*\*\*\*\*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었음을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피공탁자)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한 후 금전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한편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이의유보의 의사 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202307-1).

**\*\*\*\*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 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1.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임차인인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있었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공탁자의 서면(공탁자 작성의 건물인도확인서, 반대급부채권 포기 · 면제서 등),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 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공탁

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의 인도 사 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등이 해당한다(공탁법 제10조).

3. 이외에도, 관리비 정산내역서,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 여부 를 알 수 있는 피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통·반 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아파트 관 리소장의 인도(불거주) 확인서, 이사 확인서,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호실)과 촬영 날짜가 표 시된 현장사진, 공탁자에게 퇴거사실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 명우 편, 현관문 열쇠를 물품 공탁한 물품 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반대급부 인 건물의 인도가 있었 음을 증명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첨부 된 서면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 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다.(2024. 7. 12. 사법등기심의관-1698 질의회답)

**\*\*\*\*\*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 대위판결이 확정 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 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 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하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 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기재하여 압류결정문 사 본을 모두 첨부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사실을 모두 기 재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장 먼저 송달받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24. 6. 10. 사법등기심의관 - 3003 질의회답)

**\*\*\*\*\* 수용보상공탁 중**

##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 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 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제외
  2.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3.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공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 3) 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1. 수용대상토지등이 미등기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가.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나.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다.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2. 수용대상토지등이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소유자 불명)

3.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

나.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공탁선례 2024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손실보상금 청구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미제출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23. 11. 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시행 ]**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 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사인)인 제3채무자

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혼합공탁 중 중요사항 요약

◎ 혼합공탁사유

제3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4.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가.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①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유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 등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지만,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 확정 등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지침 2조 3호, 8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

다.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하지만, 이 경우의 신고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과 발생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탁금 출급)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10조 (공탁금의 회수)

①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권 안내문 발송

#### (1) 전자적 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①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③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④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전자적 안내 절차

(가) 전자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나) 전자적 안내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위 (가) 절차를 진행한다.

(다) 위 (가), (나)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①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② 관할 공탁소·공탁종류·공탁사건번호 ③ 공탁금액(잔액) ④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절차 ⑤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 형사공탁 관련 중요사항 요약

▶ **관련선례** : 공탁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 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 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등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예시: 홍길동(가명)]으로 기 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장소,채무 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 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① 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 ② 피해 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피공탁자 특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각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2024. 6. 13. 사법등기심의관 - 3074 직권선례)

▶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 표시

▶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에 따라 공탁금 출급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 법원, 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법원·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발급 신청 ⇒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법원·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법원,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로 송부 ⇒ 피공탁자(피해자) 공탁금 출급청구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때에 필요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한다.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또는 회수동의서 제출)을 위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하여 공탁소에 도달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 주식회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소에서 공탁 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되므로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탁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 위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 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 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란에 “홍00(사망)”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 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 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 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 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 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 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관할 공탁소에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지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공탁소 또는 발급기관(법원·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송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출급청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전자공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출급청구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 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 의 반대급부의 내용 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 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 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 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 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口동, 성춘향(가명)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탁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도 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입력 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공고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 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 단,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탁자의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 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 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 **재판기록, 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 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 서식 참조).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 개정 공탁규칙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개관**

○ 일반사건('일반사건'이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은 법원이, 가명사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과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은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해야 합니다(검찰의 경우 법원과 달리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 동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반사건이지만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정보를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검찰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송부합니다.

**▶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로 피공탁자임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요구됩니다(예규 제20조 참조).

○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이 이뤄지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피공탁자가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피공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3조 참조).

**▶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 그대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 하고, 그 후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 동일인증명서의 발급은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또는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명의를 그대로 기재한 동일인 증

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하고,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관계 서류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공탁관은 출급 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청권고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07-2호).

▶ 강도살인사건 등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상해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탁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피공탁자는 사망한 피해자가 기재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이 인정된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는 점과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상속관계는 공탁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